

2.26 '조건'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- ▶ 2004. 2. 25 배포
- ▶ 총 쪽

보 도 자 료

▶ 여성고용과 김순림 사무관

T E L : 02)502-5441

E-MAIL : tree125@hanmail.net

F A X : 02) 502-5442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뉴스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노동부, 민간기업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조치(Affirmative Action) 도입

- 기업의 채용·승진·배치 등 분야별 고용관행 개선을
위한 「고용평등계획」 수립 및 이행 -

- ☐ 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조치(AA)의 일환으로 「고용평등프로그램」을 도입하기로 하였다.
- ☐ 「고용평등프로그램」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
 - 기업은 채용·승진·배치 등에 있어 남녀인력상황을 분석하여 여성이 적게 고용된 분야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목표와 이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노동부에 제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,
 - 정부는 매년 고용평등계획의 적정성과 고용평등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정부 조달계약과

연계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(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은 경영평가 반영)하고, 언론공표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하였다.

- 동 제도 도입은,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올해는 여성 고용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, 2005년은 1,000인 이상 기업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며, 2006년부터 300인 이상 정부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.

□ 노동부는 『고용평등프로그램』 도입을 위하여 『고용평등촉진에 관한법률』 제정을 추진중이며,

- '04~'06년도까지 기업이 고용평등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 체계화 및 매뉴얼 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

- 이와 함께 사업주의 여성고용 부담 완화 조치로서, 앞으로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보험 분담수준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 하고,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.

□ 노동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「민간부문 여성고용 확대방안」을 지난 2.5일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.

□ 미국 등은 1964년부터 인종 및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고용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조달계약을 배제하거나 중지시키는 『계약준수제』를 시행하여 성차별 등에 상당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

- 우리나라도 고용평등프로그램이 정착되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, 특히 기업의 고용관리 개선을 통하여 여성의 관리직 증가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,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인사제도가 구축되어 각종 고용지표상 남녀간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.

[붙임] 민간부문 여성고용 확대방안